المرمزوالخ	보 도 자 료		내생물 한꾸는 그는			
애상무선부	배 포 일	2021. 7. 12.(월) 총 4매(본문 2, 참고 2)	규제혁신 하국판뉴딜			
담당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당 자 · 과장 정기원, 사무관 박순형, 주무관 이광호 • ☎ (044)200-5530, 5533, 533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21. 7.~'22. 6. **어기 총허용어획량** 260,966**톤 확정**

-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근해어업의 2021년 7월~2022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260,966톤으로 확정하고, 7월 12일(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는 12개 어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TAC는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cceptable Biological Catch) 내에서 설정되는데, 2021. 7.~2022. 6. 어기에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잠수기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설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대상어종(12)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 대상업종(14) : 대형선망, 근해통발, 잠수기,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자망, 연안

통발,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트롤,

동해구외끌이, 연안복합, 마을어업

2021. 7.~2022. 6. 어기의 TAC는 고등어, 오징어 등 연근해에서 많이 생산되는 어종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이 적어짐에 따라, 지난 어기의 TAC(286,045톤)에 비해 10% 감소한 260,966톤으로 정해졌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키조개, 오징어 등의 감소폭이 컸고, 전갱이, 도루묵, 참홍어는 지난 어기보다 늘어났다. TAC가 감소한 어종의 경우 조업일수와 어획량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고, TAC가 증가한 어종의 경우에는 그간의 TAC 등을 통한 자원관리로 자원량이 증가한 것이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TAC를 적용했던 갈치, 참조기에 대해 이번 어기부터 정식으로 TAC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어업인들이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1년간 시범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2022년부터 TAC를 정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강망어업 등 여러 어종이 혼획되어 어종별 어획관리가 어려운 어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획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2025년까지 TAC 관리비율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업종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1

### 2021. 7. ~ 2022. 6.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설정량

(단위 : 톤)

					\	단기 · 근/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TAC		ш			
				`20.7~`21.6	`21.7~`22.6	비고			
	· 계 15종)	18개 업종		289,863	<b>260,966</b> (83,885)	△ 10.0%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종 8종】									
합 계				284,392	256,655	△9.8%			
고	등 어	대형선망	근해	123,527	101,715	△ 17.7%			
		대형선망	근해	29,424	31,779	8.0%			
붉	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25,516	23,273	△8.8%			
키	조 개	잠수기	인천 · 경기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남 연근해	8,582	6,797	△20.8%			
대	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1,036	948	△8.5%			
꽃	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5,033	5,102	1.4%			
오 징 어	TI 01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연근해	74,775	65,384	△ 12.6			
	징 어	쌍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11,155	13,653	22.4			
		근해자망	연근해	3,148	4,797	52.4			
도	루 묵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동해 연근해	2,196	3,207	46.0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종 4종】 * 지자체 별도 수립									
합 계				5,471	4,311	△21.2%			
개	조 개	작수기 	부산·경남·전남 연근해	1,507	1,056	△29.9%			
참	홍 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서해 북위 37도 이북 해역, 흑산도 근해	447	789	76.5%			
제 -	주소라	마을어업	제주도 연안	1,879	975	△48.1%			
Н	시라	잠수기어업	경남 거제	1,638	1,491	△9.0%			
【시범도입 3종】									
		합 계		-	(83,885)				
-	갈치	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연근해	_	(30,126)	시범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_	(27,723)	시범				
1	삼치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중형저인망	연근해	-	(26,036)	시범			

-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살오징어만 해당)
  - ② 지자체 관리대상종의 TAC 설정값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도에서 확정 예정
  - ③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참여하는 근해자망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에 대한 3,000톤을 별도 유보
  - ④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10,000톤은 유보
  - ⑤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중 각각 2,231톤(쌍끌이대형저인망), 959톤(근해자망)을 유보

# 참고 2

# TAC 관리 관련 사진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확인하는 모습